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Plus Chungnam Policy Forum

CDI 세미나 2010-37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실무협의회 자료집

2010. 9. 6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실무협의회 자료집

- 때 : 2010년 9월 6일(월), 15:00~17:30
- 곳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주최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Plus Chungnam Policy Forum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운영
실무협의회 개최계획

2010. 9. 6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목 적

-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 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운영계획 협의 추진
- 충청남도의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충청남도 및 시·군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 관련 협의
- 충청남도 및 각 시·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의 역할 강화 및 갈등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 개 요

- 때 : 2010. 9. 6(월), 15:00~17:30
- 곳 :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30명 내외
 - 충청남도 및 시·군 관계관(갈등관리 포럼 관련부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4대 권역별 포럼 고문 및 임원 등
- 주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 충청남도

□ 행사일정(안)

○ 진행 : 임명재 박사(충남포럼 사무처장)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 개회인사 및 참석자 소개	포럼운영 위원장 (최병학 박사)
15:10~15:30	20	• 2010년도 포럼운영 현황 및 2011년도 포럼운영 계획(안) 보고	
15:30~16:00	30	• 실무협의 및 토론	
16:00~16:20	20	• 휴식	좌장 : 포럼고문 (이은호 교수)
16:20~16:50	30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계획(안)	
16:50~17:20	30	• 종합토론 및 자문	
17:20~17:30	10	• 정리 및 폐회	
17:40~		• 만찬	

□ 주요 협의 내용

○ 2010년도 충남포럼 상반기 운영실적 및 하반기 운영계획(안) 보고

- 「제2회 기획세미나」 주제 및 개최 계획
- 「제3회 상생협력·갈등관리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계획 협의
- 「충청남도 갈등관리 담당자 교육연수」 개최 계획 협의
- 「정책포커스」 제5호 발간 계획 협의 등

○ 2011년도 충남포럼 주요 운영계획(안)

- 지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 갈등예방관리 현장지원기능 강화
- 세미나·워크숍 및 갈등관리 담당자 교육연수 개최
- 정기간행물 「정책포커스 : 상생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 지속 발간

- 「제4회 상생협력·갈등관리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 기획연구과제 수행 및 갈등상황 대응 매뉴얼 연구개발 추진

- 사이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포럼 전용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4대 권역별 포럼과의 연계협력 및 동반발전 도모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사무국 운영 내실화 등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조례」 입법추진 계획

-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사회통합위원회/한국행정학회, 2010)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조례(안)」 충청남도/충남포럼, 2010)

□ 포럼 공식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Policy Cooper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Forum (PCPF).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the chairman, forum manager, information center, conflict management, website, and forum introduction.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ext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것" (For the sake of a society together) and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정책포럼".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news (공지사항), events (행사사항), and user login (언론스크랩). A sidebar on the right lists recent news items.

제목	날짜
·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대표률 위원회...	[2010-08-27]
· 2010년도 하반기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설립협약회...	[2010-08-16]
· 금강울리기 전문가 포럼 개최 및 현장답사 안내...	[2010-08-12]
· 충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현역기획원 제1)...[2010-08-09]	[2010-07-26]
· 한국공공정책학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초청 경청정담회 개최...	

○ 홈페이지 주소 : www.pcpf.or.kr

○ 주 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번지 충남발전연구원 포럼 사무국

○ 전화 : 041-840-1238

○ fax : 041-840-1229

【목 차】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현황 / 10
- 2010년도 포럼 운영 현황 및 2011년도 포럼운영 계획(안) / 16
-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사회통합위원회 / 한국행정학회, 2010) / 27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조례(안)」
충청남도 / 충남포럼, 2010) / 41
- [부록 1] 포럼 임원 명단 / 47
- [부록 2] 포럼 발간 자료 목록(2006~2010) / 50

【포럼 운영현황】

I.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현황 보고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현황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 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6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2007. 5. 11, 총리령 제847호),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주관기관으로 충남 발전연구원을 지정(2006. 7) 및 포럼정관 개정(2007. 5. 23)에 따라 전담 「사무국」 설치 완료

※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권택기 의원외 16인 대표발의 중)

■ 추진경과

- 포럼의 추진경과는 2006년 3월에 공공갈등관리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자체별 공공갈등관리책임관 지정·운영, 시·군별 갈등관리책임관 지정(시·군 부단체장 16명), 2006년 5월에 공공갈등관리책임관 지정·운영 등 네트워크 구축 강화, 「상생 협력·갈등관리 정책포럼」 및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세부추진계획 시행 착수, 2006년 9월에 공공갈등관리 담당공무원 역량제고 워크숍 업무연찬 실시, 공공갈등 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충청남도는 2005년도 상생협력·갈등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 또한 2006년 9월 「상생협력·갈등관리 정책포럼 창립총회」 개최계획 수립을 토대로 10월에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세부 계획 확정하였으며, 2006년 10월 30일에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2006년도 1차 워크숍 개최와 함께 임원진을 구성

- 2007년 정기총회, 1~4차 포럼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07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관련 재정인센티브를 받음
- 2008년 임시총회 및 4대 권역별 포럼 협의회 개최, 한국NGO학회와 제1회 세미나 정기총회 개최, 서해안 유류사고 갈등연구 착수, 제1·2회 갈등관리 교육연수 실시,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발표대회, 제3호 정책포커스, 기획연구과제 발간
- 2009년 기획세미나 개최, 금강살리기 공동협력 포럼 참여, 경주시 월성원전민간 환경감시센터 워크숍 주제발표 및 공식방문,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실무회의 개최, 사회갈등포럼과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상생협력 갈등관리-충남포럼-HUCARE2009 Organizer 협력네트워크 충남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자담회,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 자문회의, 금강살리기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발표대회, 상생협력 갈등관리 정책포럼 임원 및 담당 공무원 정기 교육 및 연수, 제4호 정책포커스 발간, 기획연구과제 발간
- 2010년 금강살리기 사업 갈등예방 및 관리 방향과 과제 세미나, 금강살리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제3차 간담회,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 2010년도 충남포럼과 남부권 포럼 간 협력과제 도출 자문회의, 갈등관리 제도화 추진 법률 제정 및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행정학회와 사회통합위원회 병행 추진 중

2006년도 추진경과	2007년도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006년도 공공갈등관리업무 추진 계획 수립 ▶ 5월: 공공관리책임관 지정 및 운영 등 네트워크 구축 강화 ▶ 7월: 포럼운영 주관기관으로 충남발전 연구원 지정 ▶ 9월: 공공갈등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 10월: 창립총회 및 제1차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포럼운영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5월: 제1차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포럼지정서(충남도지사) ▶ 7월: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8월: 제2차 포럼 워크숍, 제2차 운영 위원회 개최 ▶ 10월: 4대 권역별 포럼구성 간담회 개최, 제3차 포럼 워크숍, 운영위원회 개최 ▶ 12월: 제4차 운영위원회, 포럼 워크숍 개최, 제2차 정기총회

2008년도 추진경과	2009년도 추진경과	2010년도 주진사업(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2008년 포럼 운영구상, 사업계획 제출 및 예산확보 ▶ 6~7월: 포럼운영기반 재정비, 전용 홈페이지 (콘텐츠) 전면개편 ▶ 8월: 2008년도 임시총회 및 4대 권역별 포럼 협의회 개최, 한국NGO학회와 제1회 세미나 개최, 서해안 유류사고 갈등연구 착수, [정책포커스] 창간호 발간 및 배포 ▶ 9~10월: 충남공무원교육원 갈등관리과정 표준 교재 개발 ▶ 11월: 갈등관리 국내 벤치마킹 추진, 전국대학(원)생 우수논문대회 개최, 정책포커스 제2호 발간 ▶ 12월: 제1·2회 갈등 관리 교육연수 실시, 제2회 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정책포커스] 3호 발간, 기획연구과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5월: 기획세미나 개최, 금강살리기 공동협력 포럼 참여, 4대강(금강)살리기(안) 충남지역 설명회 참석 ▶ 7월: 경주시 월성원전민간 환경감시센터 워크숍 주제발표 및 공식방문,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실무회의 개최 ▶ 8월: 사회갈등포럼과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상생협력 갈등관리-충남포럼-HUCARE2009 Organizer 협력네트워크, 충남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좌담회 ▶ 9월~10월: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 자문회의, 금강살리기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 ▶ 11월: 제2회 전국 대학(원)생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 논문발표대회 ▶ 12월: 상생협력 갈등관리 정책 포럼 임원 및 담당공무원 정기 교육 및 연수, 제4호 정책포커스 발간, 기획연구과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금강살리기 사업 갈등예방 및 관리 방향과 과제 세미나, 금강살리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 3월: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제3차 간담회 ▶ 4월: 사회통합 및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 2010년도 충남포럼과 남부권 포럼 간 협력과제 도출 자문회의 ▶ 5월: 갈등관리 제도화 추진 법률 제정 및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행정학회와 사회통합위원회 병행 추진 ▶ 9월: 충남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하반기 포럼운영 실무협의

■ 포럼 조직구성

- 충남포럼 조직구성(08. 8. 13, 임시총회 확정 및 08. 12. 18 정기총회 개정 확정)
- 포럼의 조직은 총회를 중심으로 고문, 공동대표단, 전임공동대표단, 감사, 자문위원, 협력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회, 분과모임으로 구성
-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운영위원은 기획·조정, 재정·회계, 행사지원, 지식·정보, 홍보·출판, 권역별 포럼지원, 홈페이지구축 등 7개 분야로 나눴으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사회통합, 갈등연구개발, 갈등중재·조정, 대외협력, 민·관·군 협력, 지역발전, 여성발전 등 7개 분야로 구성하여 포럼의 전문성을 극대화 노력 전개
- 갈등교육훈련,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평가, 갈등협상, 갈등사례연구, 갈등영향분석·예측, 사회위험갈등완화 등 7개의 분과모임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상생협력·갈등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담론형성을 통해 갈등의 원활한 해결노력 경주
- * 포럼 상임고문 : 충남발전연구원장(당연직)
- * 포럼상임공동대표 : 이주영(충남대 명예교수)
- * 포럼운영위원장 : 최병학(포럼사무국장 겸임)



■ 주요사업

4개 권역별 포럼 운영 지원	북부권(천안, 아산, 연기, 예산), 남부권(공주, 논산, 계룡, 금산), 중부권(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해안권(서산, 태안, 당진, 홍성)
세미나·워크숍 개최	지역의 갈등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접근
상생협력·갈등관리 교육 연수	현장체험식 교육연수로 실질적 갈등관리역량 배양
국내·외 유사 갈등 사례 벤치마킹	국내·외 상생협력 및 갈등해소의 성공·실패지역 현장조사
정책포커스 발간	충청남도의 상생협력·갈등관리 분야의 정기간행물 「상생 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 정책포커스 연중 발간·배포
기획연구과제 수행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연구,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관련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방안연구, 충청남도 갈등관리인재육성 및 활용방안연구 외
전국 대학(원)생 우수 논문대회 개최	상생협력·갈등관리 관련 충남지역의 현안쟁점을 주제로 한 전국단위 논문공모전 개최 및 연구자료 발간, 전국배포
사이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맵 제작	충남포럼~4대 권역별포럼 간 지식·정보 통합관리 및 실시간 자료제공

■ 2006~2010 포럼 주요 운영성과

구분	세미나 워크숍	조사 연구	교육 연수	현장 지원	정책 포커스 발간	전국 대학원(생) 논문대회	홈페이지 운영	대외 협력	예산 (만원)	비고	
2006년	1회		1회				1회		4,000		
2007년	5회	1건	5회				1회	1회	6,000		
2008년	3회	1건	4회	1회	3회	1회	1회	2회	15,000	'08 권역별 홈페이지 개설(4)	
2009년	3회	2건	5회	1회	1회	1회	1회	5회	5,000	기본과제 1건포함	
2010년 (9월 현재)	2회	1건	2회	1회				1회	3회	5,000	진행중

**II. 2010년 포럼운영 및 2011년도
포럼 운영 계획(안)**

2010년도 충남포럼 상반기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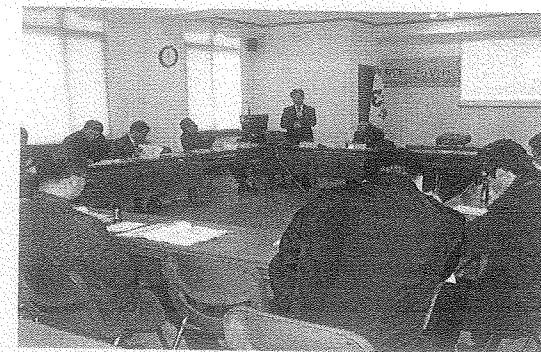
■ 2010년도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추진 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2010. 2. 2)

- 충남포럼은 2월 2일 화요일 충남발전 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추진 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함. 금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한강 살리기 사업 및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강살리기 추진방안의 시사점을 발견, 탐색해 보고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잠복되거나 또는 현재화된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등을 찾아보기 위하여 개최함
-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관간, 시군간, 주민간 갈등해결을 통한 협력 방안,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으로 문제 제기와 함께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예상되는 갈등소지와 관련한 공론화된 논의과정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함
-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본방향이 명확해야 하며, 갈등해소를 위한 고려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갈등유형별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갈등 해소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금강살리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2010. 2. 9)

-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갈등전문가들이 직접 금강살리기 사업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공주와 부여, 논산, 서천 등 지역의 농민과 각급기관 관계자, 이해당사자 등을 만나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 현장답사 및 실무 간담회는 전문가들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 지역의 주민을 직접 만나고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갈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관·학·연·언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본 포럼 임원 및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제3차 간담회 개최(2010. 3. 3)

-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를 개최하고 4대강사업 홍보물 방영, 「금강살리기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 토론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금강살리기 사업」의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계, 구체화하고 범도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합의형성 및 자문활동의 활성화하여 충남포럼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관리 및 현장지원체계 강화 필요하며 「4대강살리기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이 가장 모범적이며 협력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



■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2010. 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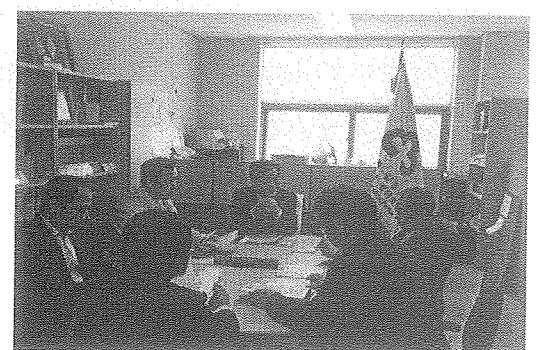
- 사회통합과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 입법 추진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으며 이미 전국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청북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충남의 갈등관리 조례 제정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니며,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갈등관리 조례제정은 중요함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2010년도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추진 및 중앙정부 갈등관리 법률제정 추진을 위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및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금년내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 제정 및 16개 시군 대상으로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전문가,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함
- 각계 각 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제안 설명과 토론을 통해 갈등예방·해결을 통한 법률안 제도화 추진에 있어서 학문적, 실무적, 전문적인 좋은 고견과 유익한 토론 내용들이 제안되었고,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은 정책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인 만큼 서둘러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강조되었음

■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 간 2010년도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2010. 4. 27)

- 2010년도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간 「금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모니터링 운영방안, 갈등순회매니저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방안,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간의 2010년도 운영계획 및 2011년도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업무 협력 강화



- 「금강살리기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공주시)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 및 방향, 교육연수,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 등 충남포럼 주요 사업과 「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의 주요 사업간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 갈등관리 조례 제정 및 '갈등조정사' 제도 도입 관련 대외협력활동

①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갈등조정사' 등 신규 자격제도 도입방안 주제발표

- 2010. 4. 23~24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병학 충남포럼운영위원장은 "행정학과 실용성"이란 학술대회 주제에 부응하여 전환기 행정학분야의 신규 자격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를 통해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취업난과 행정학과의 미래에 대해 가칭 '갈등조정사', '재난관리사', '인적자원관리사' 등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블루오션 영역을 만들어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전문가 영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

② 실효적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주제발표

- 「실효적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하여」란 주제로 열린 한국행정학회 제18회 국정포럼(2010. 5. 6)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은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을 발표함
- 최병학 운영위원장은 국가 지자체등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 신뢰 구축을 통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권위 갖춘 기관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칭) '갈등조정사' 전문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

③ 협력적 갈등관리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 주제발표

- 6월 23일(수)~24(목) 부산 해운대 팔레드 시즈 콘도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무총리실이 후원한 "협력적 갈등관리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갈등 관리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 본 포럼의 운영위원장인 최병학 박사가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현황(충남포럼)과 갈등관리 조례제정 추진사례"로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전문가(갈등조정사)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

④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 관련 2010년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 참여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위원장은 2010년도 6월 25일~26일 전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열린 2010년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인 "융합학문으로서의 행정학" 행사에 참석하여,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행정학 신규 자격증 제도의 도입방안: 추진경과 및 과제"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였음

2010년도 충남포럼 하반기 운영계획(안)

■ 제2회 기획세미나 개최(10월)

- 충남포럼은 10월 예정으로 제2회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세미나의 주제는 충남도 및 16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안갈등문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실무자,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세미나 개최를 통해 성공적인 상생협력·갈등관리를 위한 쟁점(이슈) 사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 및 바람직한 해결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 충청남도 갈등관리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11월~12월중)

- 충청남도 및 시·군 갈등관리담당자와 포럼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갈등관리 관련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분쟁조정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초청특강, 참여형 학습기회부여, 분과위원회별 분임토의 실시로 갈등관리 역량강화
- 기대효과 : 갈등관리 교육연수를 통해 학습역량 및 문제해결능력의 실질적 배양으로 갈등관리의 전문성 확보

■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11월 말)

-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논문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충남 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갈등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1차 논문심사를 통하여 최종 본선 진출 논문 8편(대학생부문 4, 대학원생부문 4) 선정, 발표대회 당일 2차 발표심사를 합산하여 최우수상 각 1편(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 각 1편(충남발전연구원장), 장려상 각 2편(포럼상임공동대표)을 수여할 계획
- 기대효과 : 전국단위 논문발표대회 개최를 통해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이고 사회갈등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위한 대학생·대학원생의 참여를 토대로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 「정책포커스」 제5호 발간(12월 말)

- 충청남도의 상생협력·갈등관리 분야의 간행물인 「정책포커스 : 상생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 제5호 발간·배포 추진. 상생협력·갈등관리에 관한 국내·외 최근 동향 조사분석, 합리적 해결 대안을 위한 조건과 방법의 개발, 추후 전망 탐색을 시도
- 금강살리기 등 주요이슈 및 2010년 충남포럼에서 실시한 세미나, 간담회, 교육연수, 논문대회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
- 기대효과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체계적, 지속적인 정책포커스의 발간, 배포를 통한 심도있는 조사연구 및 연찬활동 추진으로 바람직한 상생협력·갈등해결을 위한 관심도 증대, 지식정보 제공, 상생협력·갈등관리 노하우 확산에 기여

2011년도 충남포럼 운영계획(안)

■ 2011년 추진목표

- 「다자간 소통」을 위한 교육·연수 강화
 - 정기 세미나 개최, 갈등업무 담당자 및 임원·회원 교육연수 실시, 우수사례 벤치 마킹 현장 학습 등 지속적 추진을 통한 소통 구조의 확립으로 道, 시·군간 공동 갈등 해소 및 협력체제 모색, 도민 의식교육 강화
- 「상생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연구·조사의 내실화
 - 갈등현장 중재·관리 시스템 구축, 기획연구과제 수행, 정책포커스 발간 등을 통한 상생협력·갈등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실시간(real-time) 자식정보 제공, 상생 협력·갈등관리 저변확산 추진
- 「실천적 포럼」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 내실있는 사무국 운영, 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개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실시로 충남포럼 운영기반 고도화 및 제도화로 갈등의 실천적 예방·지원·조정 기능 확립

【2011년도 포럼 운영 방향 설정】

- ※ 교육·연구개발 및 학습역량 확보
 - ※ 갈등현장 예방관리 지원 활성화
 - ※ 포럼운영 통합관리 성공모델 구축
- ⇒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의 제도화

■ 2011년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 충남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 상생협력·갈등관리 전문역량 강화
 - 다자간 소통구조 및 사회적 합의형성 기회 확충
 - 4대 권역별 상생협력 파트너십·네트워킹 활성화
- ⇒ 포럼운영 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갈등예방의 제도적 장치」 정립
- 갈등현장의 예방 역할의 확대
 -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관련 「갈등순회 매니저 제도」 도입, 「민·관 협력 모니터링센터」 설치 운영 방안 모색 등 포럼 차원에서의 적극적 협력
 - 각 위원회별 필요시 현장협력 활성화
 - 사전 현장관리 및 실무워크숍 개최
 -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 및 합의형성 촉진, 역할분담 도모
 -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갈등 예방관리 활성화
- 세미나 및 담당자 교육연수 개최
 -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갈등관리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
- 정기간행물 발간
 - 정기정책간행물 「정책포커스 : 상생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 지속 발간
-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 제4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 기획연구과제 수행 및 갈등 상황 대응 매뉴얼 연구개발
 - 충남도내 심각한 갈등사례에 관한 기획 연구과제 수행
 - 상생협력·갈등관리 특정분야 갈등 대응 매뉴얼 작성 개발
- 사이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2008년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이어, 충남포럼~4대 권역별 포럼 간 실시간 지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갈등맵 제작, 특히 지역원로 DB구축 및 홈페이지 수요자 중심 서비스 품질 향상

○ 4대 권역별 포럼과의 연계협력·동반발전

- 북부권 : 천안시, 아산시, 예산시, 연기군
- 중부권 :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 남부권 :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서해안권 :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흥성군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사무국 운영 내실화

- 운영위원회 및 각종 실무협의회 개최
- 정책포커스 등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개최
- 지역원로위원회 출범 등 포럼역량 강화 및 내실화 추진

※ 포럼은 기본사업으로 간등현장 중재·관리시스템 구축, 간등관리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 「정책포커스」지속 발간, 제4회 전국 대학(원)생 충청남도 상생협력·간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정기적인 상생협력·간등관리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실시간 자식·정보 전달 기능 활성화, 실천자향적 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충남 4대 권역별 포럼과 연계협력·동반발전 모색, 연구조사 사업의 지속적·연속적 추진 등을 통하여 전국 제1의 간등관리 道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특히 간등현장 실천적 지원·중재 역할의 확대함으로서, 각 위원회별 현장기능을 확보 및 필요시 현장투입을 추진, 사건 현장관리 및 실무워크숍 개최,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간등중재 및 협의조정 기능 축적 관리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합의형성·역할분담을 도모할 것임

III.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사회통합위원회, 한국행정학회(2010. 5. 6)-

[법률안 구성의 주요골자]

- 종래 “갈등관리”를 “갈등예방·해결”에 중점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ADR)의 도입 등으로 법 제정·운영의 실효성 확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법적 책임범위 확대, 법적 계획 수립, 법적 기구 및 역할·기능 부여, 참여적 의사결정 및 자체 갈등관련업무 처리한계 등 명시
- 연구기관 지정·지원, 갈등조정사 양성·활용, 공무원 교육훈련 등 도입
⇒ 총 6장, 35조, 부칙으로 법률안 구성을 제안

[목 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기본원칙

-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제7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 제8조(이익의 비교형량)
- 제9조(정보공개 및 공유)
- 제10조(사회적 가치의 고려)

제3장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계획의 수립

- 제11조(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집행계획)
- 제13조(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기타 공공기관공공갈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구와 절차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제1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무)

제18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제19조(갈등영향평가)

제20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21조(협의결과의 효력 및 이행)

제22조(심의결과의 반영)

제23조(소관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제5장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제24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육성·운영)

제26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 등)

제27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사 양성 및 활용)

제28조(공무원 등의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제6장 보 칙

제29조(공공갈등관리지침의 작성 및 활용)

제30조(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31조(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2조(재정지원)

제33조(비밀엄수)

제34조(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제35조(별 칙)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역할·책무 및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갈등영향평가”란 공공사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조정”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제3자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문제해결과정을 돋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갈등관리”란 공공기관이 “갈등조정”을 포함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해당기관의 업무 및 갈등의 특성에 맞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 시책을 수립·공포·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별 공공기관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규정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제정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갈등 예방 및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예방·해결 능력을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기본원칙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기관의 장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으로 공공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절차적 정의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익의 비교형량)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또는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및 공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공공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가치의 고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공공갈등 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공갈등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기관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은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 받은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 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공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14조(기타 공공기관공공갈등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기타공공기관공공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기타공공기관공공갈등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 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공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기타 공공기관공갈등관리계획을 작성한다.

제4장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구와 절차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①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소방방재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제11조에 규정된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서를 심의·확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저희·감독한다.

④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제17조 7항에 규정된 복수기관 연계 갈등사안에 대하여 해당 기관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조에 규정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조정에 임하여야 한다.

⑤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제15조1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사무지원기능을 포함하여 갈등관리 정책수립 및 연구, 교육훈련, 갈등조정사 인력 pool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복수 기관 연계 갈등의 조정에 직접 개입하여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갈등해결지원본부를 둔다.

⑥ 갈등해결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제16조 1항에 따른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갈등 해결지원센터를 두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갈등예방·해결 정책 수립
2. 기관 내 부서 간 또는 직원 간 갈등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접 관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 해결 지원
3. 기관의 정책이나 업무 추진과정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초기에 대처해 해결하고 직접 해결이 힘들 경우 외부의 중립적 전문가 도움 얻어 해결
4.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자문,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사전 조정 작업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다이얼로그,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등 갈등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진행 지원
5. 기관의 정책이나 업무와 관련해 일반시민, 업체, 이익단체 등의 민원이나 불만, 제안이나 항의 등을 접수·처리하는 음부즈만 기능
6. 기관 직원들에 대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교육훈련
7. 기관장 및 각 부서에 갈등 관련 정책 자문 및 지원

제1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무)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 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 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 제4항 및 제26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제28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공갈등관리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갈등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공공갈등에 대한 갈등 심의 및 해결절차 권고 사항
7. 갈등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심의 및 해결절차 권고 사항
8.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에 따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 갈등관리심의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갈등영향평가를 실시 또는 중립적인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 및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④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여야 하며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갈등관리심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갈등영향평가를 위한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갈등영향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⑦ 각 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해당 갈등 사안이 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동시에 개최, 병합심의를 통해 갈등관리심의회의 종결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15조1항에 규정된 갈등관리정책협의회에 갈등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8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①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협의회는 의장 1인과 관련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갈등해결지원본부장 또는 갈등해결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갈등조정사 중에서 맡도록 한다.
- ③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갈등 사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며, 개별 면담, 회의록 작성, 사실조사 등 갈등해결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관련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공공갈등이 이미 발생 또는 차후 발생이 예상되는 정책의 담당 부서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을 원하는 경우
 2. 공공갈등이 발생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갈등 해결지원본부(복수 기관 연계 갈등의 경우) 또는 갈등조정센터장(단일기관 내 갈등의 경우)이 인정하는 경우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을 권고 하는 경우
 4. 갈등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그 영향을 받는 2인 이상의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을 원할 경우
 6. 갈등해결지원센터가 그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7.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권고한 경우
 8.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유를 심의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의결할 경우
- ⑦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조정사가 제5항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역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9조(갈등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에 따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갈등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17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갈등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동 사업을 소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갈등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그 밖에 갈등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갈등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 등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협의결과의 효력 및 이행) ①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회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결과의 반영)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 영향평가를 포함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소관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의 공공기관의 장과 민간 사업자 및 일반 시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장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기관 지정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제24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법령·정책·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공공갈등의 예방·해결과정과 관련된 지침의 작성·보급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공공갈등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육성·운영) ① 국무총리는 필요에 따라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 간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그 갈등 해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정을 받은 공공갈등관리 전문에서는 사회통합, 갈등관리, 상생협력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세미나 등 학술활동, 갈등현장 간담회, 정기간행물 발간, 홍보활동 등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 등)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및 갈등조정사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사 양성 및 활용) ①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통하여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정의 교육 및 평가를 통해 갈등조정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국무총리는 갈등조정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갈등조정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전문적인 조정·중재·협상능력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는 갈등조정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갈등 예방·해결을 위하여 갈등조정사를 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조정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조정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갈등조정사 자격 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무원 등의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과 유형별 교재 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공공갈등관리지침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총리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지침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지침에 해당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30조(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갈등 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국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공공기관의 협의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보시스템의 구축)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갈등 사례, 공공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 국내·외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재정지원) 공공기관은 공공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교육훈련과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포럼 육성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공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임수)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 회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또는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안과 충청남도 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운영 조례안】

구분	정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충청남도 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7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8조(이익의 비교형량) 제9조(정보공개 및 공유) 제10조(사회적 가치의 고려) 제11조(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집행계획) 제13조(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기타 공공기관공공갈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제1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무) 제18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제19조(갈등영향평가) 제20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21조(협의결과의 효력 및 이행) 제22조(심의결과의 반영) 제23조(소관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제24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육성·운영) 제26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 등) 제27조(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사 양성 및 활용) 제28조(공무원 등의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제29조(공공갈등관리지침의 작성 및 활용) 제30조(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31조(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2조(재정지원) 제33조(비밀엄수) 제34조(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제35조(벌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정보공개 및 공유) 제5조(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의 원칙) 제6조(갈등영향평가)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회의) 제10조(갈등조정전문위원회)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제15조(사무기구)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제19조(관련 전문가포럼의 육성·운영 지원) 제20조(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1조(재정지원) 제22조(비밀유지) <부칙>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

-충청남도/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 포럼(2010. 8)-

조례안 구성의 주요골자]

- 종례 “갈등관리”를 “갈등예방·해결”에 중점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ADR)의 도입 등으로 조례 제정·운영의 실효성 확보
 - 충청남도 및 시·군, 기타 공공기관으로 법적 책임범위 확대, 법적 계획 수립, 법적 기구 및 역할·기능 부여, 참여적 의사결정 등 명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갈등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도입 등
- 총 22조, 부칙으로 조례안 구성을 제안

[목 차]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4조(정보공개 및 공유)
- 제5조(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의 원칙)
- 제6조(갈등영향평가)
-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9조(회의)
- 제10조(갈등조정전문위원회)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제12조(수당 등 지급)
- 제13조(운영세칙)
-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 제15조(사무기구)
-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 제19조(관련 전문가포럼의 육성·운영 지원)
- 제20조(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1조(재정지원)
- 제22조(비밀유지)
- <부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예방”이라 함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조정”이라 함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지속가능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및 공유) 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정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의 원칙)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책의 추진배경
 2. 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3.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3.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언론인
4. 시민단체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당사들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갈등조정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갈등조정전문위원회는 갈등조정시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갈등조정전문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당해 조정안건의 해결시까지로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주요 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과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사무처에 공무원을 파견, 겸직시킬 수 있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 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메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메뉴얼을 작성하여 각 실·국장,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메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메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도지사는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 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 1인 외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포럼의 사무국은 지역 내 연구원 또는 대학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지정후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포럼의 사무국장은 포럼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포럼의 활동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 및 갈등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현장 간담회 개최,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업무를 시행한다.

제20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갈등관리조정사제도,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으며, 갈등의 예방을 위해 갈등매니저제도 및 민·관 협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도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MEMO